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11.28.(토) 00시부터 ‘20.11.29.(일) 24시까지(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20.11.28.(토)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11.28.(토) 02:00부터 적용
3.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 기관, 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동 명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부(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국 시·도(시·군·구)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AI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 담당부서에 결과 제출(1회/일), 해당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의 이행사항을 집계하여 우리부 AI 상황실(전자우편: fmdai@korea.kr)로 제출(1회/1일, 매24시간 마다)
- (거점소독장소 지정)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 전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 시·도(시·군·구) 방역담당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KAHIS

조회를 위한 권한 부여 요청을 통해 권한을 받아 둘 것

- 지자체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축산 농가, 축산관계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가축시장(전통시장 포함)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하여 점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4항에 따라 상황 전파 및 공고문 게재 등 조치

□ 국방부 및 경찰청

- 지자체가 설치하는 이동통제초소 운영 지원 및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 실시여부 단속 협조
 - 각 지자체는 관할지역 군부대 및 경찰청에 사전 지원 및 협조 요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본부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
- 지자체가 KAHIS의 축산차량등록시스템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축산 차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KAHIS 조회 권한 부여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사전에 KAHIS의 GPS 검색 권한 요청
- 지자체와는 별도로 전국의 가금관련 축산시설에 대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여부를 지역별, 시간대별로 점검
 - 이동중지 해제 후 지자체 실적과 비교·분석 및 지자체의 행정조치 여부를 확인,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를 11.30(월)까지 우리 부에 제출
- GPS를 장착한 차량 및 명령 대상자에게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 시행과 관련된 내용 SMS 등을 활용한 안내

<시행 전> 11월 28일 0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오니 동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거점소독장에서 세척·소독하고, 주차 장소에 주차한 후 이동중지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소독장소는 가까운 시·군 방역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중> 11월 28일 00시부터 11월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이 제한됩니다.

□ 농협중앙회

- 공동방제단을 활용, 주요 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특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일제소독
 - 농협중앙회(축산방역부)에서는 매일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우리 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자우편: fmdai@korea.kr)로 제출

□ 가금관련 협회, 농협중앙회 및 계열화 사업자

- 소속 회원농가에 대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포함) 및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홍보(SMS 발송 등) 실시
 - 각 협회 및 계열화 사업자는 회원(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시간대 별로 SMS 등을 통해 홍보 후 실적을 우리 부 AI 상황실(전자우편: fmdai@korea.kr)로 제출

붙임 1.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2.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검역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축산환경자원과장,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방역감시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역학조사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 행정안전부장관(보건재난대응과장), 환경부장관(생물다양성과장),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농촌진흥청장(재해대응과장), 국립축산과학원장(가축질병방역과장), 경찰청장(치안상황관리관),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국방부장관(재난관리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 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 질병관리청장(신종감염병대응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연구팀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질병대응팀장), 국립생물자원관장(국가철새연구센터운영팀장), 대한양계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장, 가축유기질비료협동조합장,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주무관	안영창	사무관	김준걸	조류인플루엔자전결 2020. 11. 27. 방역과장	이기중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6106	(2020. 11. 27.)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53	팩스번호	044-863-9210	/ andres@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